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정희용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소위(2024.11.2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희용의원)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분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구분하고,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제3항 및 제30조의7제1항제1호·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 확대 및 자격 등급의 세분화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수상구조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능력에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교육 수행 능력을 추가하고,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1항, 제3항 신설).

현행법령은 응급처치·구조기술·종합구조 등 총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수상구조사는 실제 직무환경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수상 안전예방 활동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수상구조사가 갖추어야 할 업무역량을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 능력으로 한정하고 있고 업무역량에 따른 자격 등급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상구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양성을 위하여 수상구조사의 자격 등급을 세분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을 실제 업무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수상구조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상구조사 자격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수정 또는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개정안은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등급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등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급별 업무수행 범위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상구조사의 자격과 유사하게 1급·2급 자격체계를 이루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과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음.

추가적으로 개정안에서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을 확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운영, 안전관리규정 작성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음.

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기간의 합리적 산정 등

현행법상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상구조사의 보수 교육 기간을 수상구조사 개인의 직전 보수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같은 기간으로 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7).

현행법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래 표와 같이 같은 날 자격을 취득해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 보수교육 기간의 차이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고,

보수교육 미 이수시 자격정지에 그치는 응급구조사와 달리 수상구조사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이 취소된다는 점과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에 비해 짧은 2년마다 이루어지는 보수교육으로 인하여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의 유지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격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수교육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보수교육의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취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 부칙(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례 부여 등)

개정안 부칙에서는 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수상구조사 자격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과 사실상 같은 자격으로 취급되어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명구조 자격체계에 대한 국민 혼란 및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단일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상구조 인력의 자격을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수상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종전의 자격자가 어느 등급의 자격증을 받는지 명확히 하였으나,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기존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특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어떤 등급의 자격을 부여 받는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등급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수상구조사의 “안전관리”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맞게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으로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수상구조사의 “안전관리”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맞게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으로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수상구조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능력으로서 “안전관리”를 “안전사고 예방 활동”으로 수정함(안 제30조의2제1항).
- 나.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업무수행 범위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안 제30조의2제3항).
- 다. 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가 특례시험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 시 부여받는 자격 등급을 명시함(안 부칙 제2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의2제1항 중 “구조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교육을 수행하기”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를 “수상구조사의”로, “자격기준”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을 “인명구조강사 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로, “등급별 수상구조사”를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u>구조하기</u>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 ----- <u>구조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교육을 수행하기</u> ----- ----- ----- ----- -----.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 ----- <u>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u> ----- -----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개정안과 같음) ③ <u>수상구조사의</u> ----- ----- ----- <u>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u> ----- -----.
③ ~ ⑦ (생략)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④ ~ ⑧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단체에서 발급한 <u>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u>등급별 수상구조사</u>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 ----- ----- ----- -----<u>인명구조강사 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은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 -----<u>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u>-----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구조하기”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를 각각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수상구조사 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 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 람을 <u>구조하기</u>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 ----- ---- <u>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u> <u>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u> ---- -----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u> <u>사·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u> <u>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 ⑦ (생 략)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 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 다.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 ----- ----- ----- ----- ----- ----- -----.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	1. -----

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u>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u>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u>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u> ② ~ ⑤ (생략)	----- ----- <u>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u> 2. ----- ----- ---- <u>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u> ② ~ ⑤ (현행과 같음)
---	--